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 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  
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하여 『장애인복지법』 일부  
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  
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안 제6조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 
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 정도’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  
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했습니다.
  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  
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  
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 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  
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  
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